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뢰설비”란 벼락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시설 또는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6조제5항제2호 중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배치확인서”를 “설계도서”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저압에 대한 검사 수행과 고압 이상에 대한 검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제5호 중 “충전소 전기설비”를 “충전소 전기설비.”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동일 사업자는 12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제33조 중 “자가”를 “자 또는 제25조제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9, 별표11, 별표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설비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해방지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공해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 발전설비의 보일러계통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설치하여 운용중인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 발전설비의 보일러계통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해당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u>“피뢰설비”란 벼락의 영향으로 부터 특정 공간·시설 또는 전 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u>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생략)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설계도서</u>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u>감리배치확인서</u>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u>제외</u>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설계도서</u> ----- ----- ----- ----- ----- <u>제외한다.</u> ---

한다)

3. ~ 5. (생략)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
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안전관
리(전기안전)·토목·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수행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 다만, 해당 분야

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저압에 대한 검사 수행과 고압 이상에 대한 검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 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후단 신설>

6. (생략)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10과 같다.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충전소 전기설비. 다만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동일 사업자는 12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6. (현행과 같음)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

----- 자 또는 제25조제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

현행			개정안		
[별표1] <u>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u> <u>상(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u>			[별표1] <u>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u> <u>상(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u>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발전설비			1.발전설비		
가. 설치공사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변경공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전기수용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 조제1호에 따른 변전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 른 송전선로를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			
<u><신설></u>			3. <u>피뢰설비</u> <u>(사업용 전기</u> <u>설비에 설치</u> <u>된 경우를 포</u> <u>합한다)</u>		
			<u>가.설치공사</u>		<u>피뢰설비의 설치</u>
			<u>나.변경공사</u>		
			<u>1) 수뢰부</u>		<u>수뢰부의 설치 또</u> <u>는 변경</u>
			<u>2)인하도선</u>		<u>피인하도선의 설</u> <u>치 또는 변경</u>
			<u>3)접지시스</u> <u>템</u>		<u>접지시스템의 설</u> <u>치 또는 변경</u>

현행	개정(안)
[별표2]	[별표2]
1. 제출서류 중 첨부서류	1. 제출서류 중 첨부서류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사. 「 <u>전력기술관리법</u> 」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u>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u> .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신설)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사. <u>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 <u>전력기술관리법</u> 」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u>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u> .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u>서류</u>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u>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사. 「 <u>전력기술관리법</u> 」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u>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u> .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u>서류로 한다</u> . 아.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사. <u>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아.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 <u>전력기술관리법</u> 」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u>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u> .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u>서류</u> 다.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u>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다.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현행				개정안			
[별표4] <u>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u>				[별표4] <u>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u>			
구분	대상	시기	비고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생략	(1) (생략) (2)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생략)	(생략)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생략	(1) 생략 (2)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u>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u>	(생략)	(생략)
2. 자가용 전기설비 가. (생략)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u>발전기</u> 계통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u>발전기</u>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u>제58조</u> 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생략)	(생략)	2. 자가용 전기설비 가. (생략)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u>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u> 계통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u>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u>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u>제39조</u> 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생략)	(생략)
2. 자가용 전기설비 가. (생략)				2. 자가용 전기설비 가. (생략)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신설)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음식점,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u>수전설비</u>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신설> (2) (생략)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u>수전설비</u>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신설>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	2년마다 2개월 전후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와 <u>전기자동차 충전설비</u>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음식점,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u>수용설비</u>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와 <u>전기자동차 충전설비</u> (2) (현행과 같음)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u>수용설비</u>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와 <u>전기자동차 충전설비</u> (<u>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u>)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	2년마다 2개월 전후	3년마다 2개월 전후 4년이내

	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 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u>수전설비</u> 및 비상용 발전설비<신설>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 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u>수용설비</u>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	--	--	--	--	---	--	--

현행	개정안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31조제2항 관련) 1. 대행범위 (이하 생략) 2.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표 생략)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한다. <신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31조제2항 관련) 1. 대행범위 (이하 생략) 2.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표 생략) 비고: 1.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한다. 2. 전기설비에 저압과 특·고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설비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한다.

현행	개정안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table><tr><th>교육과정</th><th>교육대상자</th><th>교육기간</th></tr><tr><td>가.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Ⅰ)</td><td>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td><td>3년마다</td></tr><tr><td>나.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Ⅱ)</td><td>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td><td>1회 이상</td></tr><tr><td>다.전기안전관리특 별교육</td><td>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td><td>선임된 날 부터 6개 월 이내</td></tr></table> 2. 교육내용 가.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다.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 실습 라.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마.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바.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사.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아. 신재생에너지원별 안전관리요령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 신 설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Ⅰ)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나.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Ⅱ)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1회 이상	다.전기안전관리특 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 부터 6개 월 이내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table><tr><th>교육과정</th><th>교육대상자</th><th>교육기간</th></tr><tr><td>가.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Ⅰ)</td><td>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td><td>3년마다</td></tr><tr><td>나.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Ⅱ)</td><td>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td><td>1회 이상</td></tr><tr><td>다.전기안전관리특 별교육</td><td>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td><td>선임된 날 부터 6개 월 이내</td></tr></table> 2. 교육내용 가.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다.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 실습 라.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마.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바.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사.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아. 신재생에너지원별 안전관리요령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u>차. 전기차충전설비 안전관리 요령</u> <u>카. 기타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u>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Ⅰ)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나.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Ⅱ)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1회 이상	다.전기안전관리특 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 부터 6개 월 이내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Ⅰ)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나.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Ⅱ)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1회 이상																							
다.전기안전관리특 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 부터 6개 월 이내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Ⅰ)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나.전기안전관리기 술교육(Ⅱ)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1회 이상																							
다.전기안전관리특 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 부터 6개 월 이내																							
3. 행정사항 가. ~ 나. (생략)	3. 행정사항 가. ~ 나. (생략)																								
4. 그 밖의 사항 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u>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 행할 수 있다.</u> 다. ~ 라. (생략)	4. 그 밖의 사항 가. (생략) <u>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 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 시한다.</u> 다. ~ 라. (생략)																								

현행	개정안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1. (생략) 2. 교육내용 가. 산업안전 관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다. 사업장 시공관리 및 시공안전관리 실무 라. 전문 공종별 시공안전 마. 전기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바. <u>신기술 및 에너지설비 안전시공 방법</u> <u>사.~카.(신설)</u> 3. (생략) 4. 그 밖의 사항 가.~ 나. (생략) <u>다.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u> <u>라.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u>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1. (생략) 2. 교육내용 가. 산업안전 관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다. 사업장 시공관리 및 시공안전관리 실무 라. 전문 공종별 시공안전 마. 전기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u>바. 신기술 및 신산업·에너지설비 안전시공 방법</u> <u>사. 신재생에너지원별 안전시공요령</u> <u>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시공 요령</u> <u>차. 전기차충전설비 안전시공 요령</u> <u>카. 기타 전기안전시공에 필요한 사항</u> 3. (생략) 4. 그 밖의 사항 가.~ 나. (생략) <u>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한다.</u>